

자료 09-10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세법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2009. 12. 22.

심태섭

개 요

□ 주제 :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

□ 일시 : 2009년 12월 22일(화) 14:30~17:00

□ 장소 : COEX 컨퍼런스룸 327호

□ 진행순서

14:00~14:20 개회사 및 축사

- ▶ 개회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 축 사 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중앙대 교수)

14:2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 ▶ 사회자 이전오 한국세무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 ▶ 발표자 심태섭 한국조세연구원 초빙연구위원(단국대 교수)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 ▶ 토론자 곽인찬 파이낸셜뉴스 논설실장
김찬홍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성수용 김&장 법률사무소 조세전문위원
오유탉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가나다순)

16:3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3. 본 연구의 구성	4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5
1. 일반사항	5
가. 재무제표의 표시	5
2. 수익과 원가	6
가. 수익	6
나.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s)	7
다. 종업원 급여	8
라. 주식기준보상	9
마. 환율변동효과	9
바. 법인세	11
3. 자산과 부채	12
가. 채고자산	12
나.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3
다. 차입원가(Borrowing Costs)	14
라. 투자부동산	15
마. 무형자산	17
바. 자산손상	18
사.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8
4. 금융상품	19
가.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19
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19
다. 보험계약	23

5. 결합회계	24
가. 사업결합	24
나. 관계기업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25
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Interests in Joint Ventures)	26
6.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세제에 관한 연구: 은행업을 중심으로	27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28
1.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28
가.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방법	28
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응방법	29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31
1.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31
가. 공정가치 평가	31
나. 결산조정사항	33
다. 기업회계규정의 준용여부	37
라. 기능통화	40
마.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와 불확정개념의 해석	42
2. 향후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안	43
V. 결 론	46
참고문헌	48

표 목차

<표 II-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요약	5
<표 II-2> 수익에 대한 요약	6
<표 II-3> 건설계약에 대한 요약	7
<표 II-4> 종업원급여에 대한 요약	8
<표 II-5>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요약	9
<표 II-6>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요약	10
<표 II-7> 법인세비용에 대한 요약	11
<표 II-8>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12
<표 II-9> 유형자산에 대한 요약	13
<표 II-10>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14
<표 II-11>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15
<표 II-12>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	17
<표 II-13> 자산손상에 대한 요약	18
<표 II-14>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요약	18
<표 II-15>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요약	19
<표 II-16>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약	19
<표 II-17> 보험계약에 대한 요약	23
<표 II-18> 사업결합 요약	24
<표 II-19> 관계기업투자 요약	25
<표 II-20>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요약	26
<표 II-21>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내용 분석 요약	27
<표 III-1> 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의 장·단점	29
<표 III-2> IFRS 도입에 대한 EU국가의 대응방법	30
<표 IV-1> 기업회계기준이 언급된 세법의 관련 규정	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간의 무역에 대한 각종 장벽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간 무역거래가 더욱 활발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국가간의 자본이동도 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본시장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고품질의 회계기준”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이 제정되었다. IFRS는 기존의 다른 국제적 회계기준과 다른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많은 국가간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제정된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자본시장의 참여자 및 기타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돕고, 재무제표와 기타 재무보고에 있어 고품질, 투명성, 비교가능성을 갖춘 이해가능하고 강제성이 있는 단일의 국제회계기준이다. 두 번째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가 특징이다. 이는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칙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과는 다른 것이며,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 회계기준이다. 기업의 활동이 복잡하여짐에 따라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의 자구해석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회피가 더욱 쉬워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IFRS는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 및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제로 IFRS를 마련하였다. 세 번째로 종전의 기준과 달리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이며,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¹⁾

IFRS는 국가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인식되어 가면서, 이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1) 금융감독원(2008) pp.13~14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에서는 EU금융시장의 통합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8년 8월 미국 SEC는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장 대기업은 2014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중기업은 2015년 12월 15일 이후, 상장 소기업은 2016년 12월 15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의 FASB와 IASB간에 US GAAP과 IFRS와의 일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²⁾

이러한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IFRS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향상시키며 회계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3월 15일에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2009년부터 선택적용을 허용하되 2011년에는 전면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장기업에서는 2009년부터 IFRS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측면에서 IFRS를 반영하는 본격적인 작업은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이 확정된 이후인 2010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기에, IFRS를 도입한다고 하여 세법이 변화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기업에서는 IFRS라는 대대적인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상당히 큰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면서 회계시스템의 전반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도입될 IFRS에 따라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세계 당국에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³⁾⁴⁾

그러나 IFRS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세법의 변화가 없다면 기업의 납세순응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괴리가 더욱 커져 기업의 세무조정사항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세법에 맞는 여러 세무조정사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납세순응비용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회계기준원(2008b) 참조.

3) 이러한 취지의 내용으로 조세일보 2009.5.19. 「재정부, IFRS 도입 “세법 큰 변화없어” ... ‘느긋’」 참조.

4) 2009년 초 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가 기획재정부내에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로 현행 회계기준, 앞으로 적용될 국제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이러한 검토를 근거로 법인세법과 IFRS간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세법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세법 관련 주무부서가 IFRS 시대를 맞이하여 법인세법을 개정하는 데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IFRS의 적용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그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마련되고 있다.⁵⁾ 그러나 법인세법의 개정방향보다는 현재의 법인세법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세무조정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발간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각 기준서별로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법인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하여 현재 IFRS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적용될 IFRS, 현행 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재 이미 제정된 IFRS 가운데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새로이 필요한 기준은 수시로 제정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2008년말 현재의 IFRS의 기준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기준서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법 중에서 IFRS 도입에 영향을 받는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

5) 대표적으로 정창모 외(2008),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가 있음.

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의 경우도 2008년말 현재의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연구기간중 IFRS나 법인세법에 관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3. 본 연구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우선, 현행 IFRS 중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의 대응방안으로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재와 같은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제안을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별로 분석된 법인세법 대응방안을 종합하여 법인세법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현행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의 차이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IFRS 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 우선, 현행 IFRS 중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도입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이하 K-GAAP이라 함)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K-IFRS의 규정 중 우선 회계와 관련된 일반사항을 분석하고, 이어 수익과 원가, 자산과 부채 그리고 주요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일반사항

가. 재무제표의 표시

<표 II-1> 재무제표 표시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재무제표의 명칭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식(이 외의 명칭도 대체적으로 사용 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식(이 외의 명칭도 보충적으로 사용 가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의 명칭 상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별개의 손익계산서)로 재무제표의 명칭을 일치 시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재무제표에 포함됨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제출을 요구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재무제표의 형식	정형화된 서식 제공	최소한의 항목 예시	K-GAAP에 맞춘 계정과목 분류체계 이용	다양한 형태의 재무제표 출현으로 세무행정 부담 가중	표준 재무제표 양식, 세무상 필요한 항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혹은 별도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별도재무제표로 명시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	-	-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	재무제표 명칭 변경으로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별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수익과 원가

가. 수익

<표 11-2> 수익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기업회계 기준상 매출액 변동	수익인식의 일반요건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그 효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	권리의 확정시점에 인식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변동으로 다음에 영향 1)접대비세무조정 2)공동사업손비 배분 3)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건설, 기타 용역
	수익에 대한 기준서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 등에 대해 적	생물자산의 최초인식 및 공정가치의 변동	생물자산의 자연적 가치증가를 수익으로 인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준용 기준을 세무상 매출액으로 수정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배제 항목	용배제하며 이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하는 규정 없음	등에 대해 적용 배제하며, 이는 K-IFRS 제1041호에 의해 공정가치 평가	식하지 않음	의 시가 4)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법인 5)조특법시행령 §2①에 의한 중소기업범위 및 관련 조세 지원혜택		
	고객충성 제도	매출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충당부채로 계상	추후 제공될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			고객이 구매포인트 등을 사용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
중소기업 특례	단기용역 매출	완료기준 적용 가능	특례규정 별도로 없음	완료기준. 단, 회사가 진행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증가	K-IFRS에 특례기준(일반기업 회계 기준) 마련
	장기할부 매출	할부금회수기일도래기준 적용 가능		결산조정사항으로 회사가 할부금회수기일도래기준을 적용한 경우 이를 인정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회수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이를 고려치 않아 법인세를 일시에 부담해야 함	K-IFRS에 특례기준(일반기업 회계 기준) 마련 또는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으로 수정

나. 건설계약(Construction Contracts)

<표 II-3> 건설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범위	건설, 예약매출	건설(예약매출은 재화의 인도임)	건설, 예약매출, 도급, 제조 기타용역	-장단기기준 -예약매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대응원가 적용방법	당기발생원가	계약원가×진행률	당기발생원가	손금의 범위 차이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누적발생 원가범위	누적발생 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 넓음	K-GAAP에 비하여 좁음	K-GAAP 과 일치	진행률차이	
재무상태 표의 표시	공사미수금으로 포함하여 표시	'미청구공사'와 '공사미수금'으로 나누어 표시	기업회계기준상 미수금	대손충당금설정대상영향	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다. 종업원 급여

<표 II-4> 종업원급여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퇴직급여부채의 측정	청산가치개념에 의한 일시퇴직금	예측단위 방식에 의한 보험수리적 가정을 이용하여 측정	청산가치 개념에 의한 일시퇴직금	세무조정 사항발생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K-IFRS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급여채무	퇴직금지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인식하지 않음	인식함	퇴직금지급규정에 있는 경우는 설정가능	-	-
과거근무원가와 보험수리적손익 개념 도입	규정 없음	개념을 도입하여 인식	규정없음	세무조정 사항발생	당분간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K-IFRS로 일치하는 방향으로 검토
사외적립자산의 측정	측정기준 없음	공정가치로 측정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세무조정 사항발생	현행규정 유지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영업외수익	기대수익을 퇴직급여원가에서 차감	익금에 산입	세무조정사항 발생	현행규정 유지
해고급여의 회계처리	규정없음	명시적 규정있음	규정없음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

라. 주식기준보상

<표 11-5>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가득기간의 비용	비용으로 인식	비용으로 인식	순금으로 인식하지 않음	규정간의 차이로 세무조정	현재 규정 유지
옵션에 관한 평가규정 도입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상세히 제시	옵션가격결정모형 등을 상세히 제시	옵션 평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정확한 옵션가치의 분리가 어려움. 옵션이 부착된 개별 금융상품별로 각기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됨.	세법상 옵션에 대한 통일적인 평가원칙의 제시가 필요함.
근로소득에 포함된 자본이득	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에 발생함.	보상비용은 가득기간 중에 발생함.	근로소득은 행사시점의 시가와 실제매수가액의 차이	근로소득에 자본이득이 포함되므로 소득의 분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함.	근로소득에서 자본이득을 구분하여 과세하는 규정으로 보완.

마. 환율변동효과

<표 11-6>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기능통화의 개념		있음	있음	없음	-외화환산 인식범위 차이	K-IFRS와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보고 기간말 환산 (외화→기능통화)	일반업종	-화폐성 항목: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 거래일 환율	-화폐성 항목,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 ①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항목: 거래일 환율 ②공정가치로 측정된 항목: 공정가치 결정날의 환율	-일반업종: 환산율 인정안함	미실현 손익의 과세	현행 유지, 단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은행업	-모든 외화자산/부채를 보고기간 말의 환율	-은행업도 화폐성·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일반업종과 동일한 방법으로 함(업종별 예외없음)	-모든 외화자산, 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환산	-복잡한 세무조정 -별도장부의 유지	-K-IFRS와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표시통화로 환산 (기능통화→표시통화)		-자산/부채: 기말환율 -손익항목: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경우 ①자산/부채: 기말환율 ②손익항목: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모든 금액을 보고기간말일의 환율	-기능통화 개념이 없기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세무조정 등의 혼선이 예상	-K-IFRS와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방향을 규정을 마련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계산을 위한 재무제표로 인정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환산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	(표시통화로 환산과 동일) -초인플레이션이 아	-3가지 방법 중 선택적용하	-환산방법이 선택적임	-K-IFRS에 맞는 방향으로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로 환산. 단, 독립적인 해외 지점 등에 대해서는 자산·부채는 결산 일환을, 자본은 발생당시환을, 손익은 거래당시 환율이나 평균환율 가능 -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 -해외지점 등이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년 경우 ①자산/부채: 기말환율 ②손익항목: 해당거래일 환율 혹은 평균환율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모든 금액을 보고기간말일의 환율 -환산손익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 은행업의 경우에는는 전체 재무제표항목을 결산일의 환율로 환산가능 -방법변경시 임의변경으로 3호의 방법을 적용 	-임의변경시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 (현행 2호의 방법) -임의변경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변경으로 인정할 필요성
화폐성·비화폐성구분범위	예외없음	해외사업장의 화폐성채권·채무 중 화폐성으로 보지 않는 부분 있음	예외없음	-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이 필요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비화폐성자산·부채의 공정가치환산	없음	있음	없음	-공정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움	현행규정 유지

바. 법인세

<표 II-7> 법인세비용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법인세비용구분의 어려움	세후 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음.	세후 손익이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음.	모든 법인세비용을 부인하여야 함.	상계된 법인세비용이 세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음.	부인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을 구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보완
관련규정 정비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한 법인세 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수익비용대응원칙에 의한 법인세 회계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당기법인세에 대한 규정은 법에서 규정함.	회계규정에 대응한 세무처리규정이 미비.	통칙 등을 통해 명확한 방법을 제시.

3. 자산과 부채

가. 재고자산

<표 II-8> 재고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범위	(1)적용배제항목인 농업, 임업, 축산업, 광업 관련 별도의 기준서 없음 (2)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는 항목 별도로 없음	(1)생물자산과 농림어업 수확물에 대해 제1041호 적용하여 순공정가치 평가 (2)측정부분만을 적용배제하는 항목 별도규정:일반상품 중개기업 재고자산 순공정가치 평가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증 인정하는 예외규정 없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현행규정을 유지하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공정가치 평가항목 도입 검토
취득원가	취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 차입원가의 자본화 선택가능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 차입원가 자본화 강제됨	재고자산의 경우 건설자금이 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자본화대상 재고자산의 범위를 장기적으로 K-IFR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정
재고자산의 평가	후입선출법 인정	후입선출법 불인정	후입선출법 인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1)보유이익이 한꺼번에 과세되는 부분 과세이연 또는 분할납부 (2)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에 만 후입선출법적용
	표준원가법 불인정	실제원가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표준원가법 인정	표준원가법 불인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불일치	현행 규정 유지하거나, 실제원가와 차이가 적은 경우에 표준원가 인정 검토

나.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표 11-9> 유형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자산대체시 대응되는 원가	별도 인식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음	최초 별도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만 즉시상각의제로 손금인정	즉시상각 의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포함 이 타당	즉시상각 의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개정이 필요하며, 금액기준 등 보충기준을 추가
복구(추정) 원가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당기비용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취득원가포함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음	-	현행 규정 유지
감가상각 구성요소 재검토	재검토에 대한 규정 없음	적어도 매 회계기간 말 잔존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재검토	-	-	현행 규정 유지
구성요소별 감가상각	개별 자산의 내용연수나 경제적 효익의 제공형태가 다른지 여부	취득가액의 중요성	개별자산	구성요소별 감가상각이 합리적이나 세법상 인정 안됨	장기적으로 인정 검토
재평가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적용 -공정가치감소분은 당기손익	-원가법과 공정가치법 중 선택적용 -공정가치감소분은 당기손익	-원가법 -공정가치감소분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현행 규정 유지. 회계상 반영된 공정가치 감소분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다. 차입원가(Borrowing Costs)

<표 II-10> 차입원가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자본화 강제여부	선택 적용	강제 적용	강제 적용		
자본화 대상자산	유형자산, 무형 자산, 투자자산, 재고자산(취득 기간 1년 이상)	재고자산, 제 조 설 비 자 산, 전력생산설비, 무형자산, 투 자부동산 (금융자산, 단 기간내 제조되 는 등의 재고 자산 제외)	사업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및 투자자산 제외)		
자본화대 상차입금	특정 차입금, 일반차입금	특정 차 입 금, 일반차입금	특정차입금 (일 반 차 입 금 제외)	1. 해당 자산금액의 차이	장기적으로 일 치하는 방향으 로 검토: 복잡 한 세무조정,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 차이 가 조정됨
자 본 화 대 상 금 용 비 용	일 반 비 용	현재가치할인 차금상각액, 위험회피수단 의 평가손익 과 거래손익 등 포함	명시적 규정 없음	현재가치할인 차금의 상각 액, 연지급수 입에 따른 이 자 등은 제외	2. 기업회계와 법인세법 의 차이에 따른 세무 조정의 복잡성
	외 환 차 이	포함하며, 세부 규정 있음	이자원가의 조 정부분은 포함 (세 부 규 정 은 없음)	자본화 대상이 아님	
자본화이 자의 계산	자본화대상자 산 평균지출 액 계산시 전 기이전에 자 본화 한 금융 비용을 제외	이미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당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 의 평균장부금 액에 포함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를 자본 화하지 않음		

라. 투자부동산

<표 II-11> 투자부동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투자 부동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목적보유: 유형자산 시세차익목적 보유: 투자부동산 	임대부동산의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구체적인 규정 없음. 단,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임대부동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업무무관 부동산 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면 중과 규정 적용	계정분류에 따라 감가상각비 세무 조정이 달라짐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투자 부동산의 취득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매입/자가건설: 취득원가(이자의 자본화 선택 가능) 현물출자, 무상취득: 공정가액 자산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목적 보유: 동종자산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이종자산 교환이면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시세차익 보유 목적: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매입/자가건설: 취득원가(이자의 자본화 강제) 현물출자, 무상취득, 자산교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매입/자가건설: 취득원가(이자의 자본화 불가) 현물출자: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무상취득, 자산교환: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원가의 정의가 법인세법상 취득원가의 정의와 다름. 따라서 외부매입이나 자가건설·현물출자 이외의 방법으로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회계상 취득원가를 세무상 취득원가로 조정하여 주는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투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목적보 	상각 후 원가	법인의 업무(임	공정가치 평가	현행 법인세법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동산의 평가	유: 상각 후 원가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 시세차익목적 보유: 취득가액	또는 공정가치 중 선택	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상각 후 원가로, 그 외의 투자부동산은 취득원가로 평가	로 인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규정 그대로 유지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	임대목적 보유이면 감가상각 가능하나, 시세차익 목적 보유이면 감가상각 불가	원가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인식 가능	법인의 업무(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에 한해 감가상각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두 가지 경우에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목적 보유 & 원가모형 사용 & 법인 업무에 미사용 - 시세차익 목적 보유 & 원가모형 사용 •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의 경우 기업이 선택한 평가모형에 따라 손금인식시기가 달라짐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강제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간주원가에 관한 규정 없음	간주원가에 관한 별도규정 존재	간주원가에 관한 규정 없음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평가증 또는 평가감을 세무상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운용리스부동산에 대한 권리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불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가능	리스이용자의 자산으로 인식 불가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운용리스 회계처리로 바꾸는 세무조정 필요	현행 법인세법 규정 그대로 유지

마. 무형자산

<표 II-12> 무형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무형자산의 정의	사업목적으로 보유, 식별가능성한 비화폐성 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세법상 무형자산 열거	회계상 무형자산의 유형 다양화. 세법상 무형자산의 범위가 제한적임	무형자산의 범위의 확대 고려
식별가능성의 개념	분리가능성으로 판단	분리가능성과 계약상 권리로 발생하는 경우 중 한가지 충족	세법상 무형자산 열거		
비계약적 고객관계	무형자산에 해당 안됨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	무형자산 범위에 해당 안됨		
사업결합과정에서 취득하는 무형자산	관련 규정 없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무형자산의 인식기준 충족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연구비, 개발비, 영업권으로 인식가능	구분 기준 모호함	세무상 처리규정 명확화
재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 모형 중 선택	원가모형만 인정	추가적인 세무조정발생, 세무상의 이유로 회계기준을 선택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
감가상각	유한내용연수(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걸쳐 상각	유한/비한정으로 구분 - 한정: 감가상각 - 비한정인 경우 상각하지 않고 손상 평가함	법정내용연수 적용하여 상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손금 산입 여부 불확실, 손상차손에 의한 과세회피 가능성	-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을 세법상 무형자산에 포함, 감가상각을 신고 조정으로 개정, - 손상차손에 대한 규정 명확화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의 검토	규정없음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	규정없음	-	현행규정 유지

바. 자산손상

<표 II-13> 자산손상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손상검사 손상추정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추정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추정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	감액가능 사유를 경직적으로 적용함.	실질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자산손상에 대한 감액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손상차손 인식	당기손익	당기손익	극히 예외적인 경우 손금인정, 그 이외의 경우 규정이 불분명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외에 처리가 애매함(즉 시상각의제 vs. 임의평가감)	손상차손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사.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표 II-14> 총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총당부채의 인식기준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인식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식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총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금액 증가	현행 규정 유지
총당부채의 후속 측정시 적용 할인율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을 계속 적용	현행 할인율 적용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회계상 인식한 총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금액 변동	현행 규정 유지
고객충성제도	총당부채 계상 대상에 포함	해당하는 금액을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	고객이 구매포인트 등을 사용한 시점에 손금으로 인식	세무조정금액은 변함없이 조정 항목이 변동됨	현행 규정 유지

4. 금융상품

가. 금융상품: 표시(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표 II-15> 금융상품의 표시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증권, 유가증권 등과 같이 개별유형별로 범위결정 • 형식을 중요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등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결정 • 범형식보다 실질을 우선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유형별로 범위를 결정하되 상법 등 관련법을 준용 • 관련법에 의한 범형을 중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부채의 분류가 달라지면 관련 손익의 성격 및 자본/부채기준의 세무상 한도가 변경 • 부채의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자본/부채구분에 대한 세법의 독자적 기준 필요 • 세무상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상환우선주	자본으로 분류	부채/자본으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상환우선주의 배당이 지급이자로 계상	현행규정유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조합지분 등	자본으로 분류	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자본임을 전제로 한 동업기업과제도와 배치	현행규정유지

나.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표 II-16> 금융상품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금융상품의 분류	1. 금융자산: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	1.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1. 유가증권: 주식, 채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	(구)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분류체계 사용	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분류체계에 맞춰 재조정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2. 금융부채: 명시적 규정 없음	매도가능금융 자산 2. 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기타의 금융부채	자재산 2. 기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명시적 규정 없음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	1. 일반원칙: 명시적 규정 없음(단,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식) 2.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	1. 일반원칙: 금융상품의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2.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과 결제일 중 선택	1. 일반원칙: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2. 금융상품의 정형화된 거래: 매매일	인식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의 인식과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 수용
금융상품의 취득원가	1. 유가증권의 취득자: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취득부대비용 2. 유가증권의 발행자: 발행가액	1.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2. 기타: 공정가치+거래원가	매입가액+부대비용(단,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한 경우에는 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 시 매입가액과 공정가치 간에 차이가 큰 경우에는 세무조정 필요 당기손익인식 금융상품의 거래원가와 포함 여부 	세법상 시가평가가 허용되는 일부 유가증권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거래원가와 관련된 기업의 회계처리 수용
금융상품의 평가	1.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치(당기손익) 2.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치(자본) 3. 대여금 및 수취채권·만기보유증권: 상각후원가(당기손익)	1.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부채: 공정가치(당기손익) 2. 매도가능금융 자산: 공정가치(자본)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기타의 부채: 상각후원가(당기손익)	원가법(단,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위하여 설정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허용)	금융상품 관련 평가손익, 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무조정과 이의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인정 검토: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채무증권의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할인액(할증액) 인정 금융업에 대한 공정가치평가 인정 검토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금융 자산의 손상 및 대손	<p>1. 감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손상 발생의 증거가 있는 경우 감액손실 인식 가능 - 대여금 및 수취채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p>2. 감액손실 환입: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p>	<p>1. 손상차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 가능 <p>2. 손상차손 환입: 매도가능채무증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p>	<p>1. 유가증권: 원가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함. 다만, 주식발행법인 이 파산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감액 인정</p> <p>2. 대여금 및 수취채권: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p>	<p>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경우 손상사건의 발생이 있어야지만 회계상 대손충당금의 계상이 가능한바, 회계상 대손충당금 계상액 감소로 인하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특히, 금융기관)</p>	<p>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한도 기준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모색 또는 결산조정사항에서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p>
금융 자산의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이외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거래로 봄 - 받을어음할인, 자산유동화는 일반적으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보유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 여부 판단 - 대부분의 자산유동화가 매각거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차입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의 제거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구체적인 규정 미비 - 채권의 양도거래 및 자산유동화: K-GAAP 수용 	<p>자산유동화 거래의 경우 K-IFRS 적용기업과 非적용기업 간에 과세소득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의 제거시기 및 제거요건 등에 대해 명시적 규정 마련 - 받을어음할인 및 자산유동화에 대한 규정은 현행규정유지
금융 채무의 조건변경	<p>1. 회계처리: 현재가치와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p>	<p>1. 회계처리: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최초의 금융부채를</p>	<p>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인정, 채무면제익은 익금불산입</p>	<p>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p>	<p>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이원화된 과세</p>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p>조정 이익으로 인식</p> <p>2. 적용범위: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만을 다룸</p>	<p>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함</p> <p>2. 적용범위: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p>			
파생상품	<p>1.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당기손익</p> <p>2.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공정가액 위험회피라면 당기손익, 현금흐름 위험회피라면 당기손익 또는 자본</p>	좌동	<p>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하지 않되, 은행이 보유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에 한해 선택적으로 평가손익 인식 허용</p>	<p>파생상품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 미비</p>	<p>파생상품의 종류별로 회계처리 및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통칙 등에서 예시</p>

다. 보험계약

<표 II-17> 보험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보험회사	보험계약	보험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 대상이 기업 회계와 불일치 보험료 수익 감소에 따른 기업 회계상 매출액 준용 기준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 현행 규정 유지 장기: 기업 회계와 일치
	내재 파생상품	분리하지 않음	주계약에서 분리& 공정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의 임의 평가 불인정 단, 변액보험의 경우 시가평가 선택 가능 	세무조정 추가	
	저축 요소	분리하지 않음	분리&금융부채로 보아 시가법 또는 원가법으로 평가			
보험 부채의 인식	보험 부채의 측정	순보험료 방식 (순보험료, 지급보험금)	영업보험료 방식 (순보험료, 추가보험료, 지급보험금, 계약환급금, 배당금, 사업비)	계약환급금, 지급보험금, 배당준비금을 한도로 함	세무조정금액 증가	장기적으로 K-IFRS를 수용
	충당 부채 인식 금지	비상위험준비금 등 적립 인정	비상위험준비금 등 적립 불인정	결산조정사항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규정 적용 불가해짐	이익분항목으로 신고조정으로 전환
	재보험 회계 처리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표시	별도의 재보험자산과 손익으로 인식	N/A	N/A	N/A
보험 부채의 평가	보험료 결손에 대해 신계약비 추가상각,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을 보험료 적립금으로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적정성 평가: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 또한 제2단계에서는 시가평 	부채의 임의평가가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정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규정 유지 장기적으로 IFRS에 의한 시가평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채, 보험료적립금 추가적립 순으로 처리	가 도입 예정			가 확대 검토
그람자 회계	인정됨	인정됨	인정되지 않음	세무조정 발생	현행 규정 유지
임의 배당 요소	계약자에게 배당할 금액은 준비금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채 혹은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함 자본으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은 당기손익의 배분으로 인식하고, 그 외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계약자배당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됨	책임준비금의 설정은 결산조정사항으로 자본으로 분류된 임의배당요소의 변동분을 손금으로 인식할 수 없음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전환을 검토

5. 결합회계

가. 사업결합

<표 II-18> 사업결합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회계처리	매수법, 지분 통합법	매수법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 적용 불가.	단기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 공제 규정의 보완.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
취득자 식별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상법상 합병기업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매수회사(취득자)가 달라질 가능성	실질적인 매수회사(취득자)를 세법에서 인정할 필요성이 있음.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자산·부채의 승계	피취득자 장부상 자산·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식될 수 있는 우발부채, 무형자산 등의 인식이 가능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	세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부채의 승계가가능성	현행 제도 유지(현재 세법에서 인정하는 자산·부채만 승계)
영업권	측정	매수원가-취득자산의 공정가액 (사업결합원가 + 지배력 없는 지분)-취득자산의 공정가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 비밀 등으로 유상대가를 지급한 것만 인정	인정범위가 달라, 회계상 영업권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음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가 필요
	상각	20년 이내 상각	손상검사 5년	방법과 기간이 다름	신고조정인정
부의 영업권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 상각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로 상각	연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	합병차익에 포함	인정범위, 방법이 다름	장기적으로 K-IFRS와 조화가 필요
잠정적 회계처리	불인정	인정	불인정	조세회피가능성 증대	현행 제도 유지

나. 관계기업투자(Investments in Associates)

<표 II-19> 관계기업투자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K-GAAP하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일반재무제표이므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관계회사 뿐만 아니라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도 지분법으로 평가함. 종속회사 투자에 대한 평가규정이 별도로 있음 종속회사, 조인트벤처, 지분법피투자회사 : 지분법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하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일반재무제표이므로 유의적인 영향력에 종속회사와 조인트벤처를 포함하지 않음 종속기업 : 연결로 반영 관계기업 : 지분법으로 반영 조인트벤처 :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으로 반영 	개별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연결대상인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간접 보유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회사 지분도 판 단시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을 판단시 지배기업 지분 은 배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N/A	N/A
영업권	별도 계산하여 상각함	별도 계산되지 않 기에 상각하지 않음	상각하지 않음	N/A	N/A
부의 영업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순서로 인식 1) 미래손실에 대응 2) 비유동자산의 가중평 균내용연수동안 환입 3) 잔여분은 당기손익으 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시 당기이익 으로 인식함 	환입하지 않음	N/A	N/A
지분법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가증권으로 대체되 는 가액은 지분법의 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자산으로 대체되는 가액 은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차이를 당기손익 	원가법	N/A	당기손익 을 부인

다. 조인트벤처 투자지분(Interests in Joint Ventures)

<표 II-20>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요약

내용	K-GAAP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방안
공동지배기업의 지분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지분법	비례연결 또는 지분법	원가법	비례연결 인 경우 에 재무 제 표 를 구 분 할 필요	참여자가 비례연결 의 경우 구분재무 제 표 를 작성
조인트벤처에 비회폐성자산을 출자한 경우	대가로 투자지분 외의 대가를 받 은 경우에도 양 도로 보지 않음	대가로 투자지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양도로 판단	소유권의 이전 등으 로 달리 판단	참여자의 양도소득 에 대한 손익인식 차이	참여자의 세무조정 필요

6. 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세제에 관한 연구: 은행업을 중심으로

<표 11-21> K-IFRS의 도입이 은행업 세무에 미치는 내용 분석 요약

구분	K-GAAP 은행감독규정	K-IFRS	법인세법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향	
영업수익 표시 방법	규정에 명시	없음	기업회계 기준 준용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발생	- 기업간 통일된 기준 필요 - 표시방법에 대한 세법 상 별도 규정 신설	
수익	금융용역 수수료	진행기준	좌동	현금주의	손익귀속시기 차이	장기적으로 K-IFRS 준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연체미수 이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인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	현금주의 (결산방영 시 인정)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발생	세법 규정의 보완
금융상품의 제거	양도거래	차입거래	양도거래	회계처리방법에 따 라 세부담 차이발 생	세법 규정의 보완	
대손충당금 (손상차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변동성 없음	변동성 확대	기업회계 기준 준용	납세자에 따라 세 부담 차이발생	세법 규정의 보완
	대손충당 금의 인식	- 예상손실율 - 감독규정	손실 발 생액 기 준으로 인식	- 채권 잔 액의 일 정율 - 결산조정	- 손상차손의 과 소인식으로 세 부담 증가 - K-GAAP 적용 기업과 K-IFRS 적용기업간 세 부담 차이존재	결산조정을 신고조정 으로 전환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평가인식	위험회피수단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손익 등 규정이 있음	평가손익을 인식하 지 않음 (통화선도, 통화스왑은 인정)	- 세법상 평가대 상 차이 - 일관성 있는 과 세원칙 부재	K-IFRS 준용하는 방 향으로 검토	
	내재파생 상품의 인식	당기손익인식으로 보는 복합계약 신설	규정은 없으나, 개별거래 로 보아 과세판단	명문규정이 없이, 개별거래로 보아 과세판단	K-IFRS 준용하는 방 향으로 검토	
외화자산부채 의 평가	화폐성·비화 폐성구분없음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	구분없음	환산대상의 차이 존재	K-IFRS 준용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외국의 사례

본장에서는 IFRS의 도입에 따른 주요 외국의 사례를 정리하고자 한다. 우선, IFRS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어서 2005년부터 IFRS를 도입한 유럽연합(EU)에 속한 각국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하였는가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주요 외국의 IFRS도입에 따른 세법 대응방안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⁶⁾

1.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방법

최근 많은 국가들이 IFRS를 채택함에 따라, 세법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미 IFRS를 도입한 EU의 경우 각국마다 세법과 기업회계간의 관계가 상이하기에, 나라마다 세무목적상 IFRS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났다.

이에 우선, 기업회계의 규정(특히, IFRS)를 세법에서 반영하는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접근방법을 먼저 소개한 후, 다음 절에서 실제 IFRS를 도입한 EU의 각국에서는 어떠한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가. IFRS 도입에 따른 세무당국의 대응방법

IFRS의 도입에 따라 세무당국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⁷⁾ 각 접근방법의 장·단점은 다음의 표와 같다.⁸⁾

6) 이 부분의 내용은 Newton (2006),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대한상공회의소(2008), 한국공인회계사회(2008)의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음.

7) 이 부분의 내용은 Newton(2006)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8) 이 표는 Newton(2006)의 pp.10~13의 내용과 이영한·최원석(2008) p.11의 <표 1>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표 III-1> IFRS 도입에 대한 대응방법의 장·단점

방법	주요 장·단점	
독립적 접근 방법	의미	· 기업회계기준과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장점	· 과세규정 제정 권한을 해당 국가 계속 유지 · 현행 세법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적음 · IFRS규정과 세법 기본원칙간의 충돌문제가 없으며, 손익변동성 문제도 없음
	단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는 데 따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커짐 · 기업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계산이 복잡해짐
의존적 접근 방법	의미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장부로 기업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장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가 필요없음 · IFRS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복잡한 세법개정이 필요없음 ·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계산이 간단함
	단점	· 세법상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IFRS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손익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납세액의 변동성이 커짐 · 과세규정 제정권한의 포기
중도적 접근 방법	의미	· 기업회계상의 장부를 과세소득 계산의 출발점으로 활용하는 방법
	장점	· 세무상 별도의 장부가 필요없음 · IFRS와 세법상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다 분명히 파악가능함 · 과세규정 제정권한을 계속 유지함
	단점	· 세법이 복잡하여 지며, IFRS 규정이 바뀔 때마다 개정이 필요함 · 세법과 IFRS간의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나.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응방법

일반적으로 IFRS 도입에 따라 세무측면에서 받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두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 ① 해당 국가가 앞의 세 가지 접근방법 중 어느 방법을 택하였는지?
- ② 해당 국가가 개별기업의 별도(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 IFRS를 채택하였는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으로 EU 각국의 대응방법을 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⁹⁾

9) EU국가의 IFRS 도입의 구체적 형태는 금융감독원(2008) pp.41~42를 참조.

<표 III-2> IFRS 도입에 대한 EU국가의 대응방법

접근방법 IFRS적용	의존적	중도적	독립적
강제적용	Cyprus, Czech, Greece, Lithuania, Slovenia	Iceland, Malta, Slovakia, Spain, Italy	Estonia
선택적용	Hungary, Luxemburg, Switzerland	Denmark, Finland, Ireland, Portugal ¹⁾ , United Kingdom	Norway, Poland, Netherland
적용안함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Lavita*, Sweden		

주: Newton (2006)의 그림1과 그림 2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상장법인에 대한 것을 적용한 것이며,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일부 국가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1) 은행에 대하여만 강제 적용

IFRS의 도입으로 세법측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는 “의존적 접근방법” 혹은 “중도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국가 중 개별기업에 대하여도 IFRS를 채택한 경우(강제든 선택이든)이다. 이에 비하여 “독립적 접근방법”을 취하였거나 “의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국가 중 개별기업에 대하여는 IFRS를 개별기업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IFRS 도입에 따라 세법측면에서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local GAAP도 IFRS에 맞게 개정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국가에서는 보다 시간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IFRS가 적용되기에 기업회계상 이연법인세계산이 상당히 복잡하여지는 영향이 있다.

일부 EU국가에서는 IFRS 도입을 전후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접근방법을 변경한 국가가 있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아일랜드는 종전에는 “독립적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나, IFRS 도입후 “의존적 접근방법”으로 변경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세법규정을 마련하는 데 수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하되었다. 이에 비하여 노르웨이의 경우는 “의존적 접근방법”에서 “독립적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IFRS를 2005년에 도입한 EU에서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IFRS 도입에 대응한 것을 볼 수 있다.

IV.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

본장에서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개별항목에 대한 것은 이미 앞장에서 기술하였기에 이 장에서는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K-IFRS 규정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안

우선 K-IFRS의 채택으로 재무제표의 여러 항목이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정시가의 평가,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 기능통화의 도입 등을 예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다음과 같다.

가. 공정가치 평가

전통적인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산과 부채를 역사적 원가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IFRS에서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공정가치 평가를 향후 법인세법에서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가) K-IFRS, K-GAAP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

① K-IFRS에서의 공정가치 평가

K-IFRS에서는 광범위하게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 우선, K-IFRS에서는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여 해당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내용에서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대

표적으로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¹⁰⁾

- (1) 유형자산
- (2) 무형자산
- (3) 투자부동산
- (4) 확정급여제도 하에서의 사외적립자산 등

② K-GAAP의 자산·부채 평가기준

현행 K-GAAP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2008년 말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K-GAAP이 개정이 되었다.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유형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은 여전히 원가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③ 법인세법의 자산·부채 평가기준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원가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가치의 변화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법인세법 개정방안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을 세법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손익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손익은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미실현손익으로서 법인세법상 권리나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과세소득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미 IFRS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공정가치 평가로 인한 손익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¹¹⁾ 이러한 문제 이외에 미실현손익의 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점, 과세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는 점, 공정가치 평가액의 적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논란 가능성,¹²⁾ 기업의 판단에 따른 자의적 조정 가능성, 그리고 공정가치 평가를 선택한 기업과 선택하지 않은 기업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¹³⁾ 공정가치 평

10) 이 부분에서는 각 항목별 개요만을 살펴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해당부분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 있음.

11) 싱가포르, 스페인, 이탈리아 등 극히 일부 국가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치평가손익을 과세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12) 공정가치의 구체적인 측정에 대한 문제점은 임승연 외(2008)에 정리되어 있음.

가를 세법상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서도 공정가치 평가와 이로 인한 평가손익을 세법상 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기에, K-IFRS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하여 현행 법인세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K-IFRS를 채택하여 공정가치 평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 해당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상 자산관리장부와 세법상 자산관리장부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K-IFRS에 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된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문제, 이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의 허용문제 등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사항이 더욱 복잡하여지고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가치와 관련된 자산의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별도의 장부를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필요한 경우에 법인세법을 보완하여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¹⁴⁾

나.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이란 손금을 결산서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여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세무조정절차를 말한다.¹⁵⁾ 이러한 결산조정항목으로 감가상각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정자산의 평가손실, 각종 충당금의 계상액, 법인세법상 준비금 등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은 IFRS가 도입이 될 경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우선 K-IFRS에서 회계처리가 될 수 없는 결산조정항목의 예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K-IFRS에서 회계처리할 수 없는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의 예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 K-IFRS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처리방법인 경우, 해당항목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¹⁶⁾

13) 오윤택(2009)의 pp.152~153.

14) 오윤택(2009) p.84에서도 이와 유사한 권고를 함.

15)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의 p.114.

①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을 재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

법인세법에서 K-IFRS의 공정가치평가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기업이 K-IFRS의 공정가치평가모형에 의하여 평가손실을 인식하거나 해당 자산의 손상 발생으로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에, 인식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시에 해당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게 된다. 동 유보금액은 추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한도미달액의 손금추인 과정에서 손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동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평가손실이나 손상차손에 대응되는 감가상각비는 해당 기업의 결산에 반영될 수 없게 된다.

② 영업권상각

K-IFRS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을 허용하지 않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영업권상각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결산조정사항이기에 이를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K-IFRS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기에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③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K-IFRS에서는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으나,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결산조정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전입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금액을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나 이는 K-IFRS에서 허용하지 않기에 법인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나) 문제점

결산조정제도는 법인세법상의 손금범위액이 회계기준에 의한 비용보다 큰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 혜택과 회계기준에 의한 적정한 재무제표의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포기하도록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

16) 김문철·이준규 (2008)와 오현택(2008) pp.154의 내용을 참조한 것임.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인세법의 규정이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를 조건으로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회계처리가 왜곡되거나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양자 모두 타당성이 없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과 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가 서로 대체적인 것이 아니며 기업으로 하여금 양자를 동시에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¹⁷⁾

회계기준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마련되었을 때는 이러한 결산조정사항으로 인한 문제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회계기준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여지가 줄어들므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IFRS 도입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IFRS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① 결산조정사항을 임의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

우선 모든 결산조정사항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회계는 세법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어 기업회계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실질적으로 분리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법은 각자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되어 현재의 결산조정사항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현행 단일 장부에 의한 유도법의 구조를 유지하므로 현행법의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고 실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¹⁸⁾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신고조정사항이 너무 많아져 조정사항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과세소득을 임의로 조작할 소지가 있다. 또한 영세사업자의

17) 김문철·이준규(2008)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18) 박정우·정래용(2005)

경우 자율적인 결산능력이 부족하여 그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다.¹⁹⁾

② 결산조정사항을 강제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 방법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손금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신고조정을 강제로 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강제신고조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경영자의 결산과는 무관하게 세법에서 정한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세무조정 과정이 단순화되고 이로 인하여 경영자가 임의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 방법도 강제신고조정사항이 많아 조정사항이 복잡하고, 이에 따라 결산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강제조정이다라도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단점이 있다.

③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에 이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일본·독일 등과는 달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각각 독자적인 계산구조를 가지고 이원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계산구조의 이원화는 세무조정에 의한 조정시 조정대상항목이 너무 많은 경우 조정사항이 복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운 현상을 막을 수 있다.²¹⁾

그러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는 현행 우리나라의 세무회계 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이기에 납세자인 기업과 행정당국에서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²²⁾ 이에 따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9) 최기호 외(2006) p.17

20) 최기호 외(2006) p.22

21) 이만우(1998)

22) 최기호 외(2006) p.16.

다. 기업회계규정의 준용여부

현재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고 있다.²³⁾ 이에 따라 법인세법의 여러 규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등 관련 계정금액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세법규정에 의하면 K-IFRS를 도입한 이후에는 K-IFRS에 따라 작성되거나 계산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금액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IFRS는 기존의 K-GAAP과 달리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기에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도 기업간에 회계처리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법인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는 기존의 규정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가)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규정

세법에서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1> 기업회계기준이 언급된 세법의 관련 규정

관련 법		관련조항
법인세법	법	제42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7조의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의 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23) 법인세법 제43조의 내용을 수정한 것임.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120조의 2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의 4 【과생상품】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들의 구분경리】	
기본통칙	4-0…3 【비용배분 원칙】 14-0…2 【기간손익계산 원칙】 18-18…2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19-19…44 【받을어음 할인료의 손금처리방법】 19-19…46 【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 상각액의 손금산입】 23-0…4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34-62…7 【수표·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34-62…8 【채권조정시 원금감면분에 대한 처리】 34-62…9 【채무재조정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처리】 36-64…1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40-68…3 【주식을 연불로 양도한 경우의 손익 귀속시기】 40-71…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42-74…6 【작업설물 등의 평가】 60-0…3 【기업회계기준의 준용범위】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00조의 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4조의 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72-0…2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 배제】

주) 한국상장회사협의회(2008) pp.231~232의 내용을 참조하여 재작성한 것임. 그리고 음영으로 표시된 규정은 재무제표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련된 것임.

나) K-IFRS의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새로이 도입될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Standards)이기에 모든 기업활동에 대하여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²⁴⁾ 이에 따라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의 동일한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IFRS의 도입으로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의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증가한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현재의 관련 세법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간의 과세 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업회계상 매출액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계산의 경우, K-IFRS의 도입으로 회계상 인식되는 매출액이 기업마다 다르게 된다면, 이에 따른 접대비한도액이 달라져 결국에는 기업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회계상의 금액을 이용하여 세법상 한도액을 구하는 다른 과목에도 공히 적용된다. 이에 따라 K-IFRS의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이용하는 관련 세법의 규정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개선방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FRS를 도입한 경우 기업간 서로 상이한 회계처리와 이로 인한 과세형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기업회계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세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문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자산·부채의 평가나 손익의 인식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법 규정시 그대로 적용하는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 후에 기업간의 과세형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4) 금융감독원(2008) p.14의 문구 수정.

라. 기능통화

현재 K-GAAP과 K-IFRS에서는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원화 이외의 통화에 의한 재무제표 기록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기능통화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하여 회계장부를 유지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자유화, 글로벌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우리나라 원화 이외의 통화를 주요 영업활동의 통화로 사용할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법인세법에서도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나 싱가포르 등 이미 IFRS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세법상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IFRS를 도입할 예정인 미국에서도 기능통화개념을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나라 세무당국에서도 법인세법상 기능통화개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할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기능통화의 적용범위에 대한 것이다. 즉 기업회계상 기능통화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기능통화 사용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주의에 의한 기준이기에, 기능통화의 도입 여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입장에서 보면 적용범위에 한정할 수 있다. 즉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이 기능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법인세법상 기능통화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 법인세법상 불확정개념²⁵⁾은 줄어들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회계상으로 기능통화를 도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에 기업회계상 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장부를 기장한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기능통화의 개념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에 대한 방법이다. 법인세법에서 기능통화개념을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계산이 가능하다.

25) 불확정개념에 대하여는 아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와 불확정개념의 해석”의 내용을 참조.

우선 과세소득을 기능통화에 의하여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능통화로 표시된 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을 원화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이미 기능통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싱가포르, 호주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 이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사용한 기업의 경우, 과세소득의 산출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기능통화로 작성하고, 법인세 신고 및 납부액은 평균환율 혹은 기말환율로 환산하여 해당 국가의 표시통화로 표시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방법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가장 낮은 장점이 있다.²⁶⁾ 그러나 세법상 한도계산이 필요한 금액의 경우, 표시통화에 의하여 규정된 세법규정을 기능통화에 의한 한도액으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²⁷⁾

다음 방법으로, 기능통화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여,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현행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기능통화를 도입하더라도, 표시통화와 기능통화가 다른 경우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다.²⁸⁾ 이에 K-IFRS하에서도 표시통화에 의한 과세소득의 산출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현재 원화로 표시된 재무제표에 대한 세무조정방법과 유사하기에 실무상 적용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세법상 각종 한도를 기능통화로 환산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경우 표시통화로 환산한 재무제표를 표시통화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추후 관련 법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동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외감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는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상 재무제표로 인정받는 것에는 실무적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상법상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표시통화로 환산된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기업의 장부 및 세부 부속명세서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 둘의 금액을 서로 조정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는²⁹⁾ 어려움이 예상된다.

26) 오윤택(2009) p.76.

27) 이에 대한 예는 한국조세연구원(2009)의 p.66의 예를 참조.

28) K-IFRS 제1021호 문단38

마.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와 불확정개념의 해석³⁰⁾

IFRS는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의 기준체계이다. 이에 따라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IFRS는 원칙중심으로 복잡한 회계현상을 규율하기에, 법인세법 입장에서 보면 IFRS 도입 이후 법률상 불확정개념³¹⁾이 더욱 증가하게 된다. 물론 불확정개념을 원칙적으로 쓰지 말라는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이지만,³²⁾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는 많은 불확정개념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만일 원칙중심인 IFRS의 도입으로 법률상 불확정개념이 증가한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기업간의 회계처리가 달라질 가능성이 더욱 커져 기업간의 과세형평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세무조정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물론 원칙중심의 IFRS 성격상 법률상 불확정개념의 증가는 피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과 관련하여 더욱 더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현재 IFRS의 입장은 회계기준의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하며,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IFRS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질의회신제도도 IFRS의 불확정개념을 줄일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미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의 주요 국가에서는 질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회신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되, 주요한 내용은 유럽증권감독위원회의 Data Base에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되어,³³⁾ 법인세법의 관점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세법상 불확정개념이 더욱 증가하여 이로 인한 기업간의 과세형평 등의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시행중인 국가들에 있어서도 마

29) 오유탉(2009) p.77.

30) 이 부분의 내용은 이상신(2008)의 내용을 주로 참조함.

31) 불확정개념이란 세법의 규정이 “정당한 사유”, “필요가 인정되는 때”, “현저한 손실” 등과 같이 다의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경우를 말함.

32) 이창희(2008) p.101.

33) 조세일보 (2009.8.21.)

찬가지이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에서 IFRS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불확실성, 상충되는 해석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식관련 평가, 퇴직연금,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연결범위에 대한 것 등에 대하여 회계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³⁴⁾ 이 이외에 세법의 입장에서 IFRS의 대표적인 불확정개념은 “공정가치”라는 표현이다.³⁵⁾ 공정가치의 산정을 어떻게 얼마로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기업마다 서로 다른 금액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이외에 기능통화의 도입과 관련하여 K-IFRS에서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라고 정의하고 있는데,³⁶⁾ 이러한 정의는 법인세법상 관점에서는 불확정개념이기에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더욱 더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세법상의 관점에서 많은 불확정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IFRS가 도입이 되면, 세법상 불확정개념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된다.

불확정개념은 성문의 규정을 만드는 한 불가결한 것이어서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³⁷⁾ 그러나 원칙중심으로 되어 있어 법률상 불확정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K-IFRS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기업회계상의 금액을 법인세법에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법인세법상 관점에서 K-IFRS에 포함된 많은 불확정개념을 보다 확정된 개념으로 규정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방향으로 향후 법인세법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향후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제안

앞부분에서는 내용은 각 항목별로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IFRS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외부적으로는 세계당국이 법인세법 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³⁸⁾ 왜냐하면 세계당국의 입장에서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제정이 끝나야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규

34) 파이낸셜 뉴스 (2008.3.9.)

35) 이상신(2008).

36) K-IFRS 제1021호 문단8.

37) 이상신(2008).

38) 세계당국에서는 2009년초부터 K-IFRS 도입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기업, 회계법인 및 학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정이 원칙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예외규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회계기준원 등의 발표에 의하면 2009년 말까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작업은 2010년에 이루어져 2011년에 본격적인 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K-IFRS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에 대한 혼란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K-IFRS의 도입에 따른 연도별 법인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지침이나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는 각 연도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1) 2009년 말 혹은 2010년 초: 법인세법 개정 방향의 발표

2009년도에는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 내용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향후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 원칙에 대하여는 세제당국에서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일정, 즉 로드맵을 발표하면 K-IFRS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불안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2010년도 초반 혹은 중반 이전: 전체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개정방안 제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점에서, K-IFRS의 규정 중 많은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향후 법인세법 개정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개정방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공정가치평가, 결산조정사항, 기업회계기준준용 여부, 기능통화 등에 대한 법인세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내부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2010년도 하반기 이전: 각 개별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법 개정방안의 제시

현재는 2011년 K-IFRS의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시점이며 K-IFRS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법인세법의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발표와 법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주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본 보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구체적인 항목, 특히 제IV장에 언급된 주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수용/개정 혹은 새로운 규정의 제정 여부에 대한 방침과 아울러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2011년 이후

이 시점 이후에는 우선, 개정된 법인세법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개정/제정된 규정 중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정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간의 규정일치에 따른 협상에 따라 IFRS의 지속적인 개정/제정이 예상되는바, 이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간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서 출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지, 혹은 이 두 규정을 이원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K-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K-IFRS의 각 기준별로 현행 K-GAAP, 앞으로 도입될 K-IFRS, 그리고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의 법인세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K-IFRS의 가장 큰 특징은 주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가 되는 점,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회계처리 및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인세법은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별도(개별)재무제표가 과세소득계산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한 미실현손익을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 입장에서 공정가치 평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은 경제적 실질 이외에 법적인 형식 측면도 고려하여야 하기에 K-IFRS의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개별기업의 판단에 의한 회계처리가 용인되는 원칙중심의 K-IFRS규정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각 기업간의 과세의 공평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모든 K-IFRS의 규정을 법인세법에서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재 결산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항목을 신고조정으로 하여, 손금을 인정받을 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K-IFRS규정 중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법인세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기능통화에 의한 재무제표의 작성을 예를 들 수 있다. 이 이외에 구체적인 적용방식에서 K-IFRS와 차이가 있는 법인세법의 규정은 과세소득에 큰 영향이 없다면 K-IFRS의 규정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 이자비용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세부적인 측면에서의 두 규정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비록 K-IFRS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이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K-IFRS의 규정으로 공정가치 평가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다.

이와같이 K-IFRS의 도입에 앞서 각 기준서별로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여 법인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중에 있다. 법인세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규정이 우선이고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예외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구체적인 법인세법의 개정방안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제정된 이후인 2010년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이전에 K-IFRS를 도입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법상 혼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로 생각이 된다. 과세당국에서는 기업의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K-IFRS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을 최대한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수 이외에 현재 IFRS의 제정기관인 IASB와 미국회계기준 제정기관인 FASB간의 규정 일치를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의 IFRS의 내용은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수도 현재의 법인세법 개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관계를 심도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일 현행과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중도적인 접근방법을 취할 경우, 앞으로 IFRS의 규정이 변경될 때마다 법인세법 규정을 재검토하여 개정 여부도 매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법적인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간의 관계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과 기업회계에서 출발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중도적인 접근방법으로의 법인세법을 계속 유지할지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기업회계와의 차이가 계속적으로 커지거나, 기업회계기준이 계속적으로 변동하게 된다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별도로 분리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독립적 접근방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의 이해와 도입준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8.
- 금융감독원, 『외감법 개정 내용 및 IFRS관련 주요 현안 해설』,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2.11.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관련 설문결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4.3.
- 금융감독원, 『IASB, IFRS for SMEs 발표』,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2009.7.12.
- 김문철·이준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2호, 2008, pp.155~185
- 김선문, 「개정 외감법·령 주요내용」, 『공인회계사』, 2009년 2월호, 2009, pp.8~15.
- 김진수,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기업과세제도 선진화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한국조세연구원, 2004.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08.
- 박재환·정도진, 「국제회계기준도입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2008공동심포지엄, 2008.
- 박정우·손상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권 제1호, 2001, pp.53~91.
- 삼일회계법인, 『IFRS 기준서별 해설(I)』, 2008b.
- 삼일회계법인, 『IFRS 기준서별 해설(II)』, 2009.
- 손혁·최성호·박성진, 「국제회계기준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이 세무상 미치는 효과」,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2008공동 학술심포지엄, 2008.
- 송인만·윤순석·최관, 『K-IFRS 중급재무회계』, 신영사, 2009.
- 신현걸·정재연, 「우리나라의 합병현황분석을 통한 합병회계 및 합병세제의 개선방안」, 『회계저널』, 제14권, 2005, pp.105~128.

- 신현걸·정재연,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2008 공동심포지엄, 2008.
-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계』, 탐진, 2009.
- 오윤, 「복합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 차익거래의 소득구분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제11집 제2호, 2005, pp.233~278.
- 오윤택, 『국제회계기준 채택에 따른 세법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2009.
- 이만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이원화 방안」, 『공인회계사』, 1998년 7월호, 1998, pp.48~51.
- 이만우·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고급회계』, 탐진, 2009.
- 이상신, 「국제회계기준 도입·적용의 법적 쟁점」,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4호, 2008, pp.171~193.
- 이영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세법적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제13권 제3호, 2007, pp.189~228.
- 이영한·최원석,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금융기관의 세무조정과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기준(IFRS)과 조세』, 한국세무학회·한국회계학회 2008공동심포지엄, 2008.
- 이준규, 『세법개론』, 영화조세통람, 2008.
- 이창희, 『세법강의』(제7판), 박영사, 2008.
- 이철재, 『세법강의』(2009년판), 세경사, 2009.
- 임승연·최선화·송인만·고승의·이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측정과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제고에 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47호, 2008, pp.59~85.
- 정창모·이동건·유제영·박종열·김경미·이태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무유의사항 및 세제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8.
- 조세일보, 「재정부, IFRS 도입 “세법 큰 변화없어” … ‘느긋’」, 2009.5.19.
- 조세일보, 「건설사 수익 ‘널뛰기’ 불가피」, 2009.6.10.
- 조세일보, 「[인터뷰] 최금환 금감원 회계제도실장 「IFRS 예정대로 추진」, 2009.8.21.

- 파이낸셜뉴스, 「[회계, 국경이 사라진다] ⑥ 국제기준 조기도입국 영국」, 2009.3.31.
- 최기호·문성훈, 「금융상품에 내재된 옵션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2007년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세무학회, 2007.
- 최기호·윤상수·정규언, 「결산조정항목의 강제신고조정 전환에 대한 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6.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200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의견」, 2008.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IFRS도입에 따른 세제 개선의견」, 2009.
- 한국조세연구원, 「세무상 기능통화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9.
-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와 영향 분석」, 2008a.
- 한영회계법인, 「국제회계기준과 한국회계기준 비교해설」, 한영회계법인, 2007.
- 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lueprint for Tax implications*, 2006a.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doc=/content/58517.htm>.
- Deloitte Germany, "Current amendment to accounting legislation The German act on modernisation of accounting regulations", *Praxis-Forum Alert newsletter*, 2009. <http://www.iasplus.com/europe/0908newslettergermanlaw.pdf>.
- HM Revenue & Customs(HMRC),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 the UK tax implications*, http://www.hmrc.gov.uk/practitioners/int_accounting.htm
-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Incom Tax Act (chapter 134) Income Tax (Functional Currency) Regulations 2004*, [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Quick_Links/Tax_Acts/\(이하 생략\)](http://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Quick_Links/Tax_Acts/(이하 생략))
-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 (ICAEW),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 : A repor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ICAEW, 2007.
- Newton, David, *IFRS: Tax implications for the EU financial services industry - are you ready?*, PriceWaterHouseCoopers, 2006.